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2202858)	2024. 8. 14.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9. 3.)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양부남의원 (2209295)	2025. 3. 24.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7. 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9. 3.)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 9. 3.)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9. 25.)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행정안정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이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의미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5호 신설 등).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6조제2항·제3항, 제152조제6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제106조제5항제8호 중 “제116조를”을 “제116조제1항을”로 한다.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 중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물”로 한다.

제1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제6호 중 “제116조를”을 “제116조제1항을”로 한다.

제15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4.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34. (현행과 같음)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① ~ ④ (생 략) ⑤ 시·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8.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약물----------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제150조(벌칙)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6조제1항을----------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152조(벌칙)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